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57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신동욱・박정하・이인선

박상웅 • 유상범 • 유용원

박준태 · 조배숙 · 구자근

서지영 · 김승수 · 안상훈

강승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벌금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4조의11(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방송통
	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
	<u>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u>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
	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
	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
	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u>수 있다.</u>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①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 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 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 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